

## 2023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

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협업부처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3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I. 사업개요

-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의 전략성 강화
-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, 협업부처는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

#### < 2023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현황 >

지원유형	지원대상	지원내용	정부지원금 (기업당, 최대) (비중)	사업기간 (최대)	'23년 예산 및 규모
고도화1	중소·중견기업 (분야별(운영기관별) 지원대상 조정 가능)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</li> <li>협업부처는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</li> </ul>	2억원 (총사업비의 50% 이내)	9개월	70억원 (5개분야 이내, 35개 내외)
고도화1 (동일수준*)			0.5억원 (총사업비의 50% 이내)	6개월	

\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예시,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
\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\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## II. 사업 지원계획

※ 본 공고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분야별 운영기관 선정 이후 중소·중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는 추후 실시 예정

### □ 사업개요

-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분야 등에 구축역량 집중

### □ 지원분야

-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현안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
  - 전략산업 분야 :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원전, 방산 등 제조업종 분야
  - 현안해결 분야 : 산업안전, 의약품, 식품 등 제조업종 분야

### □ 기업 지원규모

- 70억원, 35개 내외\*(고도화1, 최대 2억원)
  - \* 5개 분야(5개 운영기관) 이내, 분야별 14억원 이내, 7개 내외(고도화1, 최대 2억원) 지원 예정

### □ 기업 지원내용

-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
 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  - \*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에 대해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

### □ 운영기관 신청자격

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·민간기관이며,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  - \*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련 사업의 수행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·민간기관과 컨소시엄 가능

□ 운영기관 선정규모 및 사업비 배정

- 선정규모 : 5개 분야 이내
- 사업비 배정 : 분야별 14억원(운영비 5%이내 포함) 이내
  - '23년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배정 예정

□ 사업기간 : 최대 1년 6개월(협약기간 협의 가능)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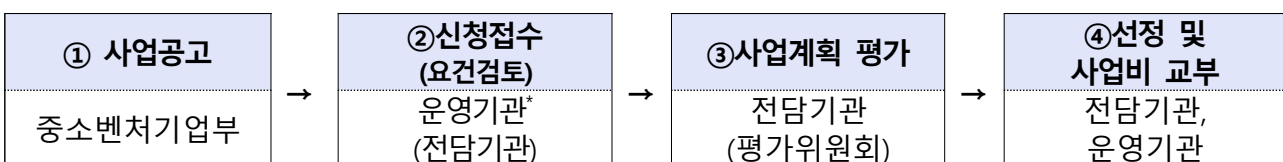
- (신청기간) 2023년 3월 3일(금)부터 4월 27일(목) 17시까지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\*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운영기관 아이디로 신청)
- \*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시 '일반사용자'와 '전문가' 중 '일반사용자'를 선택한 후 '도입 기업'을 선택하면 됨
-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
2	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 수행계획서
3	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4	관계부처 추천서(공문 등)
5	가점 증빙자료(해당 시)

\* 관련양식은 <https://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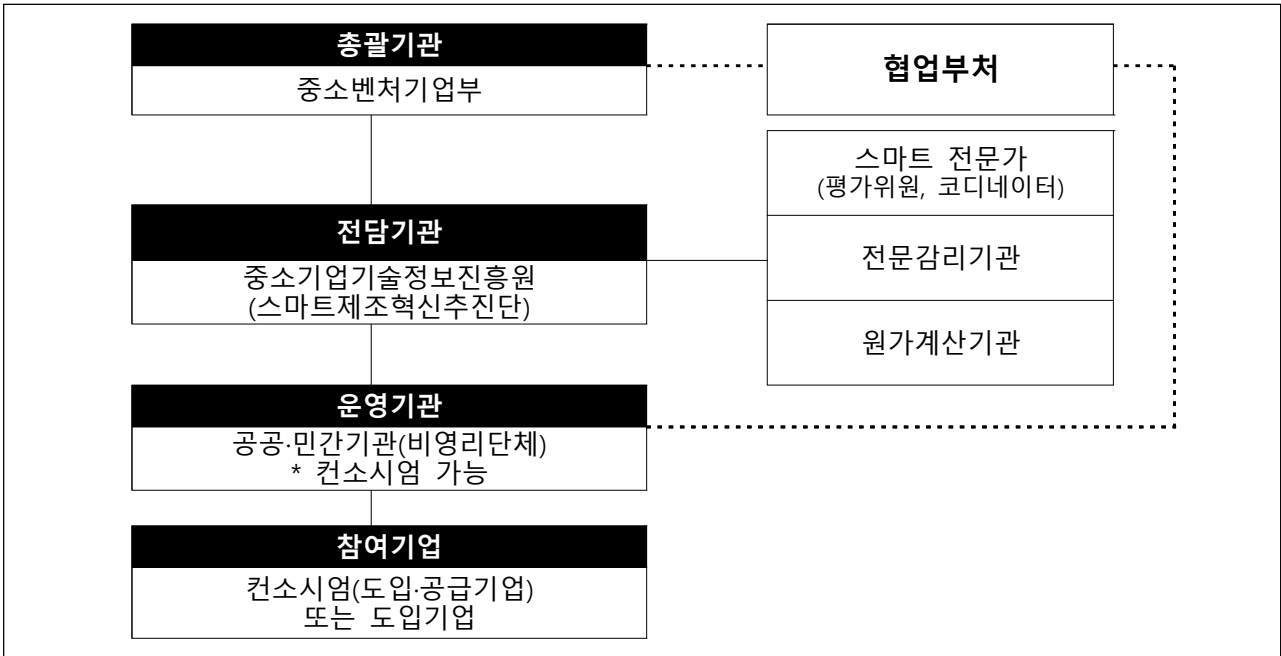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

- 추진절차



\*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과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등 컨소시엄 참여 가능

○ 추진체계 및 역할



< 기관별 주요 역할 >

구 분	주요 역할
중소벤처기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</li> </ul>
협업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기관 추천</li> </ul>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위원회 등 구성·운영</li> <li>지원분야별(운영기관별)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</li> <li>운영기관 선정, 사업비 지급, 사후관리 등</li> <li>* 운영기관에 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(구축비의 5% 이내 책정 가능)</li> <li>스마트 전문가, 전문감리기관, 원가계산기관 운영</li> </ul>
운영기관 (공공·민간기관(비영리단체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, 구축현황 점검(중간·완료점검 등), 사후관리, 사업비 집행(정부지원금 위탁운영),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등</li> <li>*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과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등 컨소시엄 참여 가능</li> </ul>
참여기업 (컨소시엄(도입·공급기업) 또는 도입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마트공장 구축 및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이행</li> <li>*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불필요</li> </ul>

## □ 운영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

### ○ 선정절차

- 운영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,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 수행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면(발표) 평가 진행
  - (선정 시 평가 주안점)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,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정성,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, 스마트공장 수요발굴 등

### ○ 대면(발표)평가 기준

구 분	평가 항목	배점
사업전략의 적정성 (60)	-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	30
	- 사업기획, 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	20
	-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	10
운영기관 역량 (40)	- 지원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	10
	- 스마트공장 수요발굴 역량	10
	- 사업운영 역량 (홍보, 사업추진절차 이해도, 사업·사후관리 등)	20
합 계		100

- (가점부여)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스마트공장 관련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증빙자료(MOU, 관계부처 합동 대책방안 등) 제출 시 가점 5점 부여

## □ 기타사항

- 운영기관은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·관리방안 및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등에 대해 사업 수행계획서에 제시
- 대면(발표)평가 결과 60점 이상(가점 포함)이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정(5개 이내)(단, 동일분야의 경우 1개 운영기관 선정)

### III. 문의 및 연락처

담당기관 연락처

기관명	연락처
중소벤처기업부	국번없이 1357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59